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12.3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붙임 :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1부. 끝.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2026~2035)

2025. 12

강원특별자치도

1.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기간 내(2026~2035년) 강원특별자치도 각 18개 시·군별 지역적 산업의 특성을 반영,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합리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산업입지요구를 반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입지 수급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목적이 있음

2.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성격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공급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임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정, 시·도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의 산업여건 및 수요, 시·군·구별 지역현황 등을 고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계획임

3.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법적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4.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간과 목표연도

-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2026~2035)으로 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조정 가능함

5.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원칙 및 내용

1)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원칙

- 강원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와 향후 산업단지 확대 계획 등 자체적 발전방향 포함
-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을 고려, 수급계획의 탄력성을 제고
- 산업입지 구조재편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수급계획의 실천력 제고
- 지역별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원활한 입지공급 계획수립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계획수립과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포괄하여 수립
- 관련 상위계획과 법령을 검토하여 반영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휴·폐업 면적,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활용 등 기존 용지를 산업용지로 우선 공급
-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실적을 검토, 계획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5년 단위 수급계획의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급계획 수정·보완

2)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내용

-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정책은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고려, 특별자치도의 특례 및 국가차원의 특구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활용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및 국가차원의 특구를 활용한 기업경쟁력 제고
 -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연구개발특구 및 국가추진 특구 사업에 특별자치도 특례를 연계하여 국내 최고의 기업천국 기반조성
- 지속가능한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 권역별 특화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대규모 산업단지를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모델 실현
 - AX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설계 및 조성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활용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강원특별법 상의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 발굴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확대와 강원 7대 미래산업 중심의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추진을 통한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7.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요추정

1) 수요추정 분석결과

-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산업입지(개별+계획입지)제조업 부지면적 및 생산액 원단위 시계열 분석결과 2035년 총수요 면적은 28,629~32,171천㎡로 산정됨
- 이에 따라 계획기간 내(2026~2035년) 순수요 면적은 3,511~5,841천㎡로 추정되며, 순증가 면적은 4,445~7,394천㎡로 산정됨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총수요 면적 및 순수요 면적 추정 결과》

(단위 : 천㎡)

예측년도	수요추정 부지면적	
	단순지수평활	생산액 원단위
2026	24,629	25,337
2027	25,073	25,932
2028	25,518	26,561
2029	25,962	27,228
2030	26,406	27,935
2031	26,851	28,684
2032	27,295	29,478
2033	27,740	30,321
2034	28,184	31,217
2035	28,629	32,171
순증가	4,445	7,394

8.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의 순수요 면적 확정 고시(국토교통부)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입지(계획입지) 순수요는 수요추정치를 바탕으로 3차에 걸친 국토연구원 컨설팅 및 협의와 국토교통부 검토를 통해 확정됨
- 목표 계획입지 비율은 계획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실 공급 계획입지 면적 비율에 10%p 가산한 결과인 79%를 적용함
-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최종고시되는 계획입지 순수요 면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입지 순수요 면적으로 산정된 3,511~5,841천㎡의 범위에서 산출된 순수요 추정치의 평균치와 계획입지 내 비제조업 수요(8%), 기반시설 용량 수준에 따른 가산 등을 포함하여 4,957천㎡로 확정됨
- 또한 국토교통부의 『제5차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26년~2035년), 2024.4』에 근거하여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한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조정 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급격한 산업구조의 여건변화에 따라 금차 계획기간 내(2026~2035)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규모가 부족할 경우 향후 5년 후에 수급계획의 변경·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함

9.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규모

1)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규모 산정결과

- 산업단지내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규모는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 순수요 면적에 추가수요인 선공급 면적, 재개발·재정비 면적, 미분양 면적, 해외이전 면적, 휴·폐업 면적을 가감하여 계획기간 내(2026~2035년)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면적을 산정함

○ 계획입지 순수요 면적 : 산업용지 추정면적 × 계획입지 비율[최근 5년간 비율+10%]

- 계획입지 비율을 적용하여 확정된 순수요 면적(4,957천㎡) 채택
※ 목표 계획입지 비율은 계획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실 공급 계획입지 면적 비율에 10%p 가산한 결과인 79%를 적용함

○ 선공급 면적 : 계획기간 순수요의 3년치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지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면적으로 계획기간 동안 계획입지 순수요 중 3년치에 해당하는 면적
- 선공급 면적(1,487천㎡) = 순수요 면적(4,957천㎡) ÷ 10년 × 3개년 선공급 분

○ 재개발·재정비 면적 : 재생사업지구 산업용지 중 재생계획으로 인한 추가 수요면적 : 0.0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지정된 재생사업지구 산업용지 중 재생계획(재생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재생시행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이전 수요

○ 미분양·미개발 면적 : 1,886천㎡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미개발 면적

○ 휴폐업 면적 : 0.0천㎡

- 시·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휴·폐업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규모 산정결과》

(단위 : 천㎡)

$$\begin{array}{|c|} \hline \text{계획입지} \\ \text{공급면적} \\ \hline (4,558) \\ \hline \end{array} = \left[\begin{array}{|c|} \hline \text{순수요} \\ \text{면적} \\ \hline (4,957)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선공급} \\ \text{면적} \\ \hline (1,487)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재개발} \\ \text{재정비} \\ \text{면적} \\ \hline (0) \\ \hline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hline \text{미분양} \\ \text{미개발} \\ \text{면적} \\ \hline (1,886)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휴.폐업} \\ \text{면적} \\ \hline (0) \\ \hline \end{array} \right]$$

(A) (B) (C) (D) (E)

○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기간(2026~2035)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4,558천㎡
으로 산정됨

2)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권역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규모

○ 권역별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면적을 위한 권역 구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
계획(2021~2040) 수립’의 분류에 따름

《 강원특별자치도 권역구분 》

권역	시·군
춘천권	춘천, 화천, 양구, 철원군, 홍천
원주권	원주, 횡성
강릉권	강릉, 동해, 평창
설악권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남부권	영월, 정선, 태백, 삼척

○ 권역별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산정된 권역별 공급량은 다음과 같음

《강원특별자치도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 규모(2026~2035년)》

(단위 : %, 천㎡)

권역 구분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설악권	남부권	계
공급면적	1,691	1,580	646	242	399	4,558
비율	37.1%	34.7%	14.2%	5.3%	8.8%	1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53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17개 시·도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7개 시·도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면적 (㎡)	25,750	655,920	593,450	345,100	475,550	535,080	513,600	354,750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적 (㎡)	1,975,100	495,700	2,568,000	2,415,000	1,777,250	1,767,800	2,131,440	2,019,200	72,925